

2024년 제1회 항공기상청 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항공기상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9월 10일
항공기상청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운전서기보	1명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인천시광역시 중구)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운전	운전서기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행정업무 지원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 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 10. 29.)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시험(2024.10.29.) 현재 유효한 자격증으로 국내자격증에 한함 ※ 면허정지(예정)인 자는 응시 불가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 9. 20.) 기준]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 후 운전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 (승객대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소형이하)*로 운전한 근무경력만 해당, 최대 4년, 기간별 차등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모별 세부기준상의 분류에 따름 ○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여부(최근10년) (사망사고, 음주·약물복용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는 전체기간 동안 횟수와 상관없이 해당요건 0점 처리)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복수 소지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등급별 차등 우대) ○ [전산·사무분야 관련 자격증] (복수 소지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등급별 차등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아래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참고
가산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급수별 차등 우대)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4. 9. 20.)**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우대요건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불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 후 운전분야 1년 이상의 근무경력**
(승객대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소형이하)*로 운전한 근무경력만 해당**, 최대 4년, 기간별 차등 우대)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모별 세부기준상의 분류에 따름, 이하 동일 적용
 - ※ **승합자동차(중형이상)·화물차량·특수차량 운전경력**은 제외
- ▶ **군 경력의 경우 운전 관련 주특기자로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인원 수송을 위해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소형이하)를 운전한 경력**이 '군 운전경력확인서' 등으로 증빙된 경우에 한해 인정
- ▶ 수송병과 또는 운전병 특기 등 병과·주특기 기재만으로 운전경력 불인정, 군 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 경력 불인정(보병, 포병 등 다른 병과 경력은 근무경력으로 불인정)
-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경력 1건만 인정하여, 업무연속성 및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2019. 9. 21. ~ 2024. 9. 20.**) 근무경력에 한하여 인정

[경력인정 기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재직)증명서에 ①업체명, ②근무기간(년, 월, 일 표시), ③직위(직급), ④담당업무, ⑤운행차종(차량종류 및 승차인원 등), ⑥근무형태, ⑦주당 근무시간, ⑧발급 확인자(성명, 연락처), ⑨발급일자가 명시(①~⑨ 모두 명시)된 경우 인정**되고, 경력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임용예정직무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필요시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추가서류 제출 가능
- **외국어로 된 서류나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한글 번역본 미제출 시 해당 경력 불인정**)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하고, 주40시간 초과 시 주40시간으로 간주함
-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력인 경우 불인정**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 (보완 서류: 4종 모두 제출) ① 관련 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지9호, 경력증명서]를 사용하여 제출

-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여부

(공고일 기준 최근10년, 건수 및 종류에 따라 차등배점)

- ▶ 제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운전경력증명서상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일정 점수 감점(차종 미구분)
- ▶ 운전경력 전체기간 동안 사망사고,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의 경우 횡수와 관계없이 해당항목 '0'점 처리
- ▶ 운전경력증명서 발행처: 경찰서 또는 정부24 (www.gov.kr)
-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시험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로, 조회기간을 모두 '전체'(운전면허경력전체/교통사고전체/법규위반전체)로 하여 발급
- ▶ 서류 미제출, 공고일 이전 발급, 조회기간을 '전체기간'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판달불가로 해당요건 '0'점 처리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소지자(등급별 차등 우대)

- ▶ 자동차정비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
- ▶ 자동차검사 기능사·산업기사·기사
- ※ 복수 소지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전산·사무분야 관련 자격증] (등급별 차등 우대)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2012.1.1. 이전의 워크프로세서 1급 포함),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 복수 소지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가산요건 관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급수별 차등 우대)

-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서류 전형)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로 합격자 결정(적극적 서류 전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가산점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아래의 평정요소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후 평정 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 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 9. 10.(화) ~9. 20.(금)	'24. 9. 13.(금) ~9. 20.(금)	'24. 10. 22.(화)	'24. 10. 29.(화)	'24. 11. 14.(목)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공고시 시험기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시)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기상청 및 항공기상청 홈페이지 게재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 9. 13.(금)~9. 20.(금)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 서류 접수 시, 우편봉투 결표지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 등기우편접수 주소: (우)22382 인천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 항공기상청(2F-0023)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 문의전화: 032-740-2803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서식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③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④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7호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8호
	⑨ 응시자격요건 증빙서류(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⑩ 운전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경찰서 또는 정부24) 1부	
	⑪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⑫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예정, 재학, 휴학, 재적) 증명서 사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⑬ 직무분야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9호
	⑭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⑮ 전산·사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⑯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4. 11. 14.~12. 13.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2024년 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인사담당(032-740-2803)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운전	운전서기보	1명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인천광역시 중구)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행정업무 지원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등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 관련 지식 ○ 안전하고 원활한 운전업무를 위한 차량 점검·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최종(면접)시행 예정일 현재 유효한 면허(국내자격증)에 한하며 면허정지(취소) 또는 면허정지(취소)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 후 운전분야 근무경력(최대4년, 기간별 차등우대) (승객대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소형이하)* 운전경력으로 한정, 승합자동차(중형이상)·화물차량·특수차량 운전경력은 제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모별 세부기준상의 분류에 따름 ○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여부(최근 10년, 건수 및 종류에 따라 차등 배점) (사망사고, 음주·약물복용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는 전체기간동안 횟수와 상관없이 해당요건 '0'점처리)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소지자(등급별 차등 우대) - 자동차정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소지자 - 자동차검사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소지자 (복수 소지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전산·사무 분야 관련 자격증]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등급별 차등 우대)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2012.1.1. 이전의 워드프로세서 1급 포함),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복수 소지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급수별 차등 우대) 	
<p>※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p>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함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8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9. 응시자격요건 증빙서류(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 면접 시 원본 지참
10. 운전경력증명서 1부	○ 필수서류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로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11.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서류(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12. 최종학교 졸업 (예정, 재학, 휴학, 재적) 증명서 1부	○ 필수서류 ○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구 분	내 용
<p>13. 직무분야 관련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9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인정되는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관에서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자체 서식으로 발행한 경력증명서(자체 서식의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보험 자격득실 증명·확인 서류만 제출 시 불인정 * 근무기관이 아닌 각종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증명서)만 제출 시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기재사항: ①업체명, ②근무기간(년, 월, 일 표시), ③직위(직급), ④담당업무, ⑤운행차종(차량종류 및 승차인원), ⑥근무형태, ⑦주당 근무시간, ⑧발급 확인자(성명, 연락처), ⑨발급일자가 명시(①~⑨ 모두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경력 1건만 인정하며, '업무 연속성 및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2019.9.21. 이후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한정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굴삭기, 포크레인 등) 운전경력은 제외) * 담당업무: "운전" 또는 "인원 수송"가 명시되어 있을 것 * 운행차량: "승용자동차 또는 경형·소형 승합자동차 및 인원"이 명시되어 있을 것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전임(주40시간 근무)" ○ 군 운전경력의 경우, 운전 관련 주특기자로 제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인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력이 군운전경력확인서를 통해 확인될 경우에 한해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운전직 근무경력과 인정기준 동일 : 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한정 ○ 경력증명서(또는 군운전경력확인서) 미제출 시 해당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 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②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4.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 제출
15. 전산·사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 제출
1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 제출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시험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명	임용예정 직급	응시분야
	운전서기보(운전)	운전

연번	제출 목록	제출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1호
2	응시원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2호
3	이력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3호
4	자기소개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4호
5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5호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6호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7호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필수)	○ 별지서식 제8호
9	응시자격요건 증빙서류(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필수)	
10	운전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전체경력으로 발급) 1부(필수)	
11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필수)	
12	최종학교 졸업(예정, 재학, 휴학, 재적) 증명서 1부(필수)	
13	직무분야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	○ 별지서식 제9호
14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15	전산·사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16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 "○"표시

☞ 위 순서대로 제출(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시원서 (원본)

항공기상청장 귀하

본인은 2024년 제1회 항공기상청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응시원서 (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운전서기보(일반직공무원) / 운전	
응시자격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5,000원)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응시직급 및 분야		운전서기보(일반직공무원) / 운전	
응시자격			
※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에 배부합니다.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하며,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운전서기보(일반직공무원) / 운전
- ② 응시자격: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예) 1종 보통 운전면허
- ③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도 발급 가능(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용도: 행정수수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확인서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임이 확인되어야 함)

『※』 표시란: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번호	※ 채용담당자 기재	응시직급 및 분야	운전서기보 / 운전	성명	
------	------------	-----------	------------	----	--

2. 응시자격

자격	자격명	자격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3. 우대요건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운행차량정보 (차종 및 인승)	근무형태 (주 근무시간)
	○○○○ (○○과)	20.1.1 ~ 22.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20.5.1~21.1.1.(육아휴직)	주무관 (8급)	상세표기요망 예) 기관장 차량 운행	승합자동차 소형(15인승)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여부	분 류			건 수		
	음주·약물·무면허·뺑소니·사망사고			0 건		
	그 외 교통사고			0 건		
	교통법규 위반			0 건		
자격증	자격증명	면허(등록)번호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3. 가산점

자격증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직급 및 분야: 운전서기보 / 운전
- ③ 응시자격: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내용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④ 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직무(운전)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을 최근 순서로 기재(최근 경력 위쪽, 과거 경력 아래쪽)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해당하는 경력만 작성
-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운행차량정보, 근무형태)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작성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직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직급)를 나누어 기재
- 운행차량정보는 차종(승용자동차, 경형·소형승합자동차) 및 승차인원, 모델명을 상세하게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법규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여부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운전서기보 / 운전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요약서 A4 2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자기소개서 (계속)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2024. . . 작 성 자: (인)

<별지서식 제5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분야	운전서기보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관련 경력·실적,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관한 직무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분량은 요약서 A4 2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직무수행계획서 (계속)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항공기상청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제공목적: 제출자료 진위 확인
- 제공하는 항목: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항공기상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항공기상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등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행정정보명
결격사유 유무 정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 _____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민감정보 수집 항목: **범죄경력정보**
-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항공기상청장 귀하

